

학원 석면안전관리 안내서

학원 석면안전관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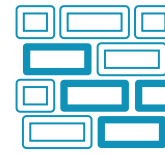


학원 석면안전관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대상 학원의
연면적이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 2009년 이전 착공신고 된 건축물 대상)

학원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건축연도와 해당 연면적을 확인하시어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합니다.



우리 주변의 석면

석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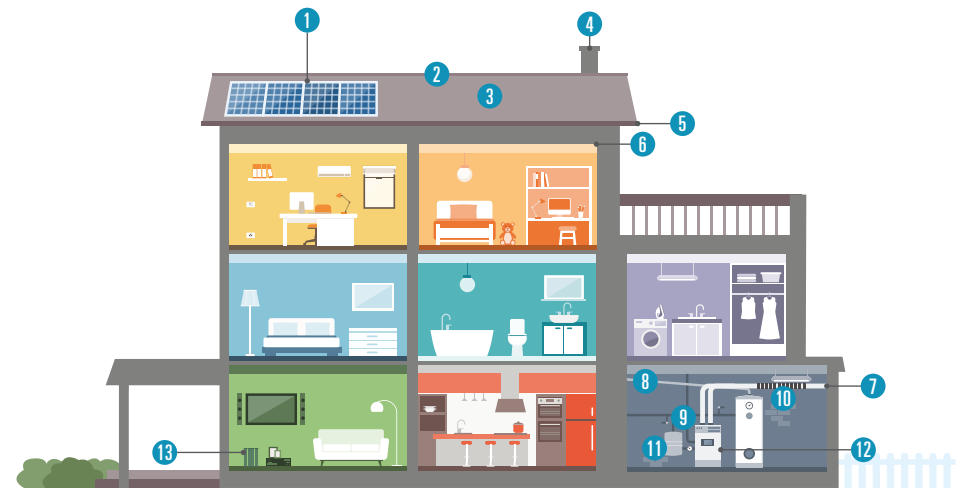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나?

건축물에 쓰인 석면건축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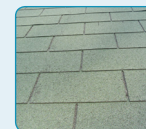
- | | |
|------------------|------------------------|
| ① 지붕단열재 | ⑧ 단열재(푸즈박스외 오래된 전선) |
| ② 지붕마감재 | ⑨ 보온재 (배관및 ○자부분) |
| ③ 건물 밖 판자벽이나 벽판자 | ⑩ 점함부의 석면테이핑 |
| ④ 연통·굴뚝 | ⑪ 단열재 |
| ⑤ 단열재 | ⑫ 개스킷 |
| ⑥ 방음재(천장) | ⑬ 레디에이터 내부의석면
테이핑처리 |
| ⑦ 배관단열재 | |



세부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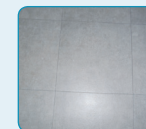
슬레이트(지붕)



아스팔트싱글



텍스



비닥타일



비산성분무재



밤라이트



석면 위험성 바로 알기

석면에 대해 지나친 공포심은 갖지 말아야

한 번만 노출되어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수백억 개의 섬유를 들이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단 한 번의 노출로 석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사용된 석면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석면섬유를 대량 흡입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면이 사용된 건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석면은 공기 중으로 날려 사람이 다량 흡입을 할 위험성이 없다면 즉각 철거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철거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석면전문 철거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석면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경계해야

석면이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다?
 석면 섬유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맛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납니다. 게다가 석면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치병에 가깝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준치 이하로 노출되면 안전하다?
 석면해체작업장의 석면 농도 기준치는 0.01개/cm³입니다. 이 기준치 이하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에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은 안전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석면건축물은 얼마나 되나?
 환경부는「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석면사용 금지(2009년) 이전에 건축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석면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의 건축물에 석면조사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자재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78천여동)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석면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석면건축물이란?

- 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 ②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어떤 석면건축자재가 주로 사용되었나?
 석면건축물의 석면함유자재는 약 99%가 천장재, 지붕재, 벽재, 바닥재, 칸막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자재는 분무재, 내화피복재, 보온재, 단열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적절한 유지·보수 활동으로 석면자재가 손상되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호흡기에 미치는 위해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의 올바른 관리 방법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함유자재의 비산 가능성에 따라 해체·제거 및 유지·보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기적 평가를 통해 석면함유자재의 손상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적 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은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 방법 등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 의무대상 학원 연면적 430㎡ 이상으로 조정 예정

향후에는
학원 연면적
43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도
석면조사의
의무가 발생

기존에
석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건축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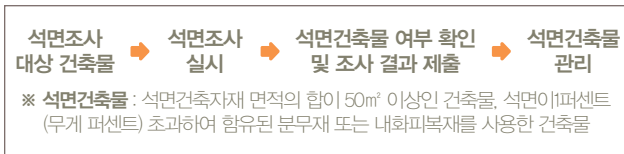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학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연면적 430㎡ 이상인 경우로 변경됩니다.

석면관리제도는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도의 흐름>



건축물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녹색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인증)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석면조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고 결과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조사주체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공공건물의 경우 관리기관)
-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까지 기록·보존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제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건축물 관리인에게 :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건축물석면조사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소유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축물소유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석면건축물인 경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석면건축물 소유자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 ※ **지정 신고**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 교육이수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1회(6시간) 이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
-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제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결과서류 저장)

- 1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 2 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 건축주 사용 권한을 획득해야 석면조사 결과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 1) 일반건축물 대장
 - 2)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
 - 제출방법
 - FAX(032-590-4769)
 - E-mail(asbestos@keco.or.kr)
- 3 석면조사결과 제출**
 - ① '석면조사결과제출 바로가기' 클릭
 - ②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
 - ③ 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 ※ 준비해야할 첨부파일
 - 석면조사결과서
 -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 ④ (접수) 버튼 클릭 → (출력) 버튼 클릭 →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
 - ⑤ 민원24클릭, 접속

민원접수-민원24 (온라인)

- 1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서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원안내 → 기관별민원 → 환경부 → 37.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관리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클릭
- 3 민원서식 작성**
 - 석면조사식별번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 자료등록 후 받은 식별번호
 -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창이 뜰 경우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성명을 민원24에 가입한 건축물 소유주의 성명과 동일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 4 민원신청하기 클릭**
- 5 석면건축물일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록)**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 클릭 →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



석면조사를 받은 학원 관리 기준

이미 석면조사를

받은 학원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연면적
1,000㎡ 이상중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안전관리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기적 점검 및 조치 실시

-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위해성 정도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건축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 조사 및 조치 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석면건축자재 관리 및 감독

-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
- 공사가 시행된 후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석면건축물 개보수, 해체의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거되는 석면건축자재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
- 제거되는 석면건축자재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 자체 제거가 가능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제거 기준 준수



홈페이지 | <http://asbestos.me.go.kr>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제출 후 민원24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학원 연면적 1,000㎡ 미만 석면안전진단 무료 지원 사업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학원 연면적

1,000㎡ 미만인 경우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석면조사를
무료로 받아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학원 연면적

430㎡ 미만인 경우

학원의 경우 장시간 활동하는 실내공간인 만큼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높은 손상 가능성

-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왕성한 활동에 의해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음
- 구조물 변경 및 설치 등의 행위에 의하여 손상된 석면건축자재에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이 높음

긴 실내 사용시간

-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학원 실내 공간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사용 시간이 길며, 특히 선생님의 경우 장시간 체류
- 체육 등 실내 활동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및 석면입자의 비산 가능성을 높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이 사용하는 시설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목적

-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학원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보수 등 컨설팅,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사용인원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대상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430 제곱미터 미만)
-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 1일 이전
- 석면조사 미 실시

사업수행 절차

<p>1 단계 대상선정</p> <p>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신청 공고 및 대상자 선정</p>	<p>2 단계 석면조사</p> <p>건축자재 시료채취 및 분석,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p>	<p>3 단계 석면안전진단 컨설팅</p> <p>석면조사 결과서 제공 및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에 따른 보수 등 조치 방법 제시</p>	<p>4 단계 만족도 조사</p> <p>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p>
--	---	---	---

※ 석면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석면안전 학원 인정서 제공

환경부에서는

석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자 모집

한국환경공단
(032-590-
4764/4754)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 유지·보수 방법 등 석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제공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http://www.adrc.or.kr>)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정보 제공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http://asbestos.me.go.kr>

석면안전관리 도움센터 1661-4072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안내 한국환경공단 032-590-4764/4754



이 발행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환경정책 개정 내용을 알리고,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발행한 안내문입니다.